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현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2023. 6. 20.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43호로 2023년 5월 4일 임헌호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혈액관리법」상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규정의 신설로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장려하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헌혈자에게 지역사랑 상품권 등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예우 사업을 통해 헌혈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혈액관리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3. 5. 1. ~ 5. 6.)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을 내용으로 「혈액관리법」이 개정(시행. 2023.6.22.)되어 헌혈을 장려하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헌혈자에게 지역사랑 상품권 등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예우 사업을 통해 헌혈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8조(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헌혈한 사람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또는 영등포 사랑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헌혈과 관련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해 구청장이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안 제8조제1호로 이동시킴.
- 그 외에 「혈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10조)

○ 검토 결과

「혈액관리법」 제2조제4호는 “헌혈자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서는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혈액의 매매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본 조례안은 헌혈 증진 활동을 목적으로 관내에서 헌혈을 실시한 지역 거주민에 한해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직접적인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대한적십자사에서도 헌혈 장려를 위한 전국별·지역별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음.

앞으로 시행될 「혈액관리법」(시행. 2023.6.22.) 제4조의8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헌혈을 장려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헌혈 권장을 목적으로 지역화폐 등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지급 효과 및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지원 한도 및 배부 방법 등을 면면히 검토하여 실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혈액관리법

- 제3조(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給付)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제14조에 따른 헌혈증서를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다른 사람의 혈액(제14조에 따른 헌혈증서를 포함한다)을 제공받거나 제공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교사(敎唆)·방조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혈액을 채혈하거나 수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의6(헌혈추진협의회 구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제4조의8(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추천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

③ 헌혈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3. 6. 22.] 제4조의8

2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